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22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	3
---------------------------------------	---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3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12.

나.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 나.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다.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1조의2 신설).
-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인 사람의 장기 기증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u>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u>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 ----- ----- ----- ----- ----- <u>뇌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u>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 <u>뇌사추정자, 뇌사판정대상자</u>

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
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
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 략)

④ (생 략)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
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
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
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
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이하 “연명
의료중단등결정자”)의-----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자-----

2. -----
뇌사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뇌사판정대상자
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를-----

-----.

-----.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신설>

<신설>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생략)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

-----뇌사판정대상자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에-----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중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제27조의2(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48조(벌칙) -----

-----.

다. 1. ~ 7. (생 략) <u><신 설></u>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u>연명의료중 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뇌사자, 사망자만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장기 기증·이식 관리 현황 >

(단위: 명, 건, 2023.12월 기준)

연도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이식 형태			
		계	뇌사장기이식건수 (뇌사기증자)	생체장기이식 건수	사망자 안구이식건수 (사후기증자)
2019	40,253	5,902	1,846 (450)	3,956	100 (52)
2020	43,182	5,878	1,892 (478)	3,932	54 (29)
2021	45,843	5,843	1,779 (442)	3,995	69 (42)
2022	49,765	5,268	1,600 (405)	3,626	42 (24)
2023	51,857	5,481	1,937 (483)	3,469	75 (37)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장기기증 등록 대상에 뇌사자 또는 사망자 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대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순

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¹⁾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규정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시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또한, 말기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이식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도 있는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음.

□ 한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장기기증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²⁾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323호)>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9조의2(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각 호의 어느</u>

1)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과는 다른 개념이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사망에 이른 후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23호)가 동 개정안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완료된 후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등록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②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방법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을 통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기기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뇌사자 장기이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술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 기증 사실 통보와 신고 등 절차 관련 사항을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³⁾ 장기등 기증 절차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식대상자 선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 기증을 위한 처치⁴⁾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동시에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임종기에 이른 환자의 장기 기증 의사 결정을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조직적합성(HLA) 검사, 장기상태확인 영상검사, 폐관된투여, 에크모를 위한 카테터 삽입 등의 처치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중단결정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이식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병원협회)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은 목적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를 장기등 기증자로 포함하고,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치료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시 병원 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강조하는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부분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 환자·고령자이고, 이들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었을 때 임종기 판단이 되므로 개정되더라도 실제 기증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등 신설에 찬성

-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에 대한 장기기증을 위한 개정안에 공감하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대상자 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DCD 관련 해외 사례
-------------	---------------------

□ 해외 장기기증 현황

(단위: 인구백명만당 장기기증자 수, pmp)

구분	'19년		'20년		'21년	
	뇌사	DCD	뇌사	DCD	뇌사	DCD
스페인	33.55	16.06	24.30	13.10	26.06	14.14
미국	28.62	8.26	28.29	9.74	29.23	12.65
영국	14.51	10.37	12.18	6.5	11.71	8.41
벨기에	19.78	10.52	12.33	8.87	15.40	11.7
네덜란드	6.13	8.80	5.85	9.06	5.75	10.12
스위스	11.70	6.70	11.2	5.80	12.5	6.6
프랑스	26.28	6.97	20.75	2.40	21.29	3.39

* 자료: 보건복지부

□ 국가별 DCD 관련 입법례

국가	내용	비고
네덜란드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은 경우 <u>비가역적 심정지가 발생한 5분 후부터</u> 가능	장기이식법
영국	사망은 인공적인 대뇌순환의 <u>후속적인 회복이 없는 경우 5분간의 지속적인 심폐정지 후 확인</u>	영국이식협회가 정한 '순환사후 사망한 자로부터의 이식'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미국	① 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 또는 ②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사망을 정의	통일사망판정법

* 자료: 보건복지부